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3호 2022. 1. 27.(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17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2-20호 사천시 어촌뉴딜 300사업(구우진항)기본계획수립 ——— 21
- 사천시 고시 제2022-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23
- 사천시 고시 제2022-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2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2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사천시 고시 제2022-17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명 칭: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248,494㎡

↳ 변경 248,498㎡ (증 4㎡)

라. 조성목적: 서부 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마. 개발기간 : 2012. 09. 13 ~ 2022. 12. 31.

바.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변경 - 위탁자: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사. 관리기관: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아. 추진경위(추가)

○ 2012. 09. 13.: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 2015. 03. 05.: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5-28호)

○ 2015. 07. 23.: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5-98호)

○ 2016. 06. 02.: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120호)

○ 2016. 12. 29.: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268호)

○ 2017. 07. 27.: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7-133호)

○ 2018. 07. 12.: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고시(사천시 고시 제2018-120호)

○ 2018. 12. 27.: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268호)

○ 2020. 01. 02.: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1호)

○ 2021. 01. 14.: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
지형도면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22호)

○ 2021. 05. 2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135호)

○ 2021. 12. 16.: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승인 및 지형
도면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374호)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자. 입지여건

시설명	현 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지방도 1002호선에서 접근가능	~ 2022년	•주진입도로 - 중로1-56호선 (L=235m, B=20m) - 소로1-2호선 (L=140m, B=10~20m)	사천시
		~ 2022년	•부진입도로(소로2-258호선) L=84m, B=8m	사업시행자
철 도	진주역(KTX) 이용	-	-	-
공 항	사천공항 이용 가능	-	-	-
용 수	-	~ 2022년	•계획 용수량 : 2,087m ³ /일 (축동산단 : 663m ³ /일) •배수지 용량 : V=1,200m ³)	사천시 사업시행자
전 력	-	~ 2022년	•9,015MWh/년	한국전력 공사
오·폐수 처리	-	~ 2022년	•계획 오·폐수량 : 197.8m ³ /일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후 처리)	사업시행자
폐기물 처 리	-	-	•생활계 및 배출시설계, 지정 폐기물 발생량 : 187.507톤/일	전문 처리업체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1) 목 표

-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으로 협동화를 추진
- 기술개발 및 수출 산업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2) 추진방향

-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내실화
-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입주대상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산업단지 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2)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

구분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비 고
기정	248,494 (100.0)	158,006 (63.6)	4,205 (1.7)	86,283 (34.7)	
변경	248,498 (100.0)	158,006 (63.6)	4,205 (1.7)	86,287 (34.7)	

2) 용도별 구역계획도 : 별첨 #1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3)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산업”에 따라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입주가능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 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 불가

○ 공공시설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1) 배치기준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을 집단화, 계열화 단지로 업종 배치
- 업종별 특성 및 주변지역 환경적 영향 고려하여 배치

2)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업 종	면 적(m ²)	업체수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65,281	13	25	
산업시설	소 계	158,006	10	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36,128	1	8	BL2-3, BL2-4, BL2-5, BL2-6, BL2-7, BL2-8, BL2-9, BL2-1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3,838	1	3	BL4-1, BL4-2, BL4-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10,495	1	2	BL3-1, BL3-2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58,299	1	5	BL1-5, BL2-1, BL2-2, BL2-11, BL2-1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39,246	6	4	BL1-1, BL1-2, BL1-3, BL1-4
지원시설	지원시설	4,205	1	1	
공공시설	주차장	3,070	2	2	주차장 1, 2

3) 업종별 구역계획도 : 별첨 #2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마. 입주관리계획(변경없음)

1) 입주대상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산업단지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제한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중 다음의 업종 입주불허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시멘트,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제조업(C23994)
-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배출사업장은 입주불허
- 지원시설용지내 어린이집, 병의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입주불허
- 관리기관은 공해 다발, 용수 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4) 입주 우선순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의 규정에 따른다.

5) 입주절차

-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바.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

1) 설치계획

구 분	시설명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86,283	86,287	
공공시설	도로	34,479	34,479	7개노선
	배수지	1,824	1,824	1개소
	저류지	5,850	5,850	1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550	1개소
	주차장1	2,070	2,070	
	주차장2	1,000	1,000	
	공원	3,943	3,943	소공원 2개소
	완충녹지	35,567	35,571	3개소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사.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목 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합리적·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 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함
- 산업용지의 처분 및 분할에 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름
- 산업용지의 최소 필지 분할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은 같은 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 설립 완료 또는 사업 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 다만, 입주기업이 연결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 면적은 1,650㎡ 이상 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 하여야 하며 합필 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 시 입주 계약 해지)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 계약 시는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 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공장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공단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 확정 후 필지를 분할 코자 할 경우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 한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

○ 환경관리

- 인·허가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서류 검토 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할 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및 재해 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 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I-1	12,294	12,294	I-1	I-1	1,000	1,000	주차장㉓
-	I-2			I-2	I-2	2,070	2,070	주차장㉓
-	I-3			I-3	I-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 ⑥
-	I-4			I-4	I-4	5,850	5,850	저류시설⑨
-	I-5			I-5	I-5	1,824	1,824	배수시설⑧
-	II-BL1	158,006	158,006	II-BL1	II-BL1-1	58,825	11,978	
	II-BL1-2				4,651			
	II-BL1-3				6,204			
	II-BL1-4				16,413			
	II-BL1-5				19,579			
-	II-BL2			II-BL2	II-BL2-1	74,848	10,311	
	II-BL2-2				9,195			
	II-BL2-3				8,581			
	II-BL2-4				4,369			
	II-BL2-5				3,153			
	II-BL2-6				2,269			
	II-BL2-7				2,336			
	II-BL2-8	3,201						
	II-BL2-9	4,599						
	II-BL2-10	7,620						
	II-BL2-11	8,705						
	II-BL2-12	10,509						
-	II-BL3	II-BL3	II-BL3-1	10,495	8,840			
	II-BL3-2		1,655					
-	II-BL4	II-BL4	II-BL4-1	13,838	2,745			
	II-BL4-2		2,280					
	II-BL4-3		8,813					
-	III	4,205	4,205	III	III	4,205	4,205	
-	IV-1-1	39,460	39,464	IV-1-1	IV-1-1	15,523	15,523	완충녹지㉔
-	IV-1-2			IV-1-2	IV-1-2	4,959	4,963	완충녹지㉕
-	IV-1-3			IV-1-3	IV-1-3	15,158	15,158	완충녹지㉖
-	IV-2-1			IV-2-1	IV-2-1	2,253	2,253	공원㉗
-	IV-2-2	IV-2-2	IV-2-2	1,690	1,690	공원㉘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1)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2)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I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1 I-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1 II-BL1-2 II-BL1-3 II-BL1-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1-5 II-BL2-1 II-BL2-2 II-BL2-11 II-BL2-1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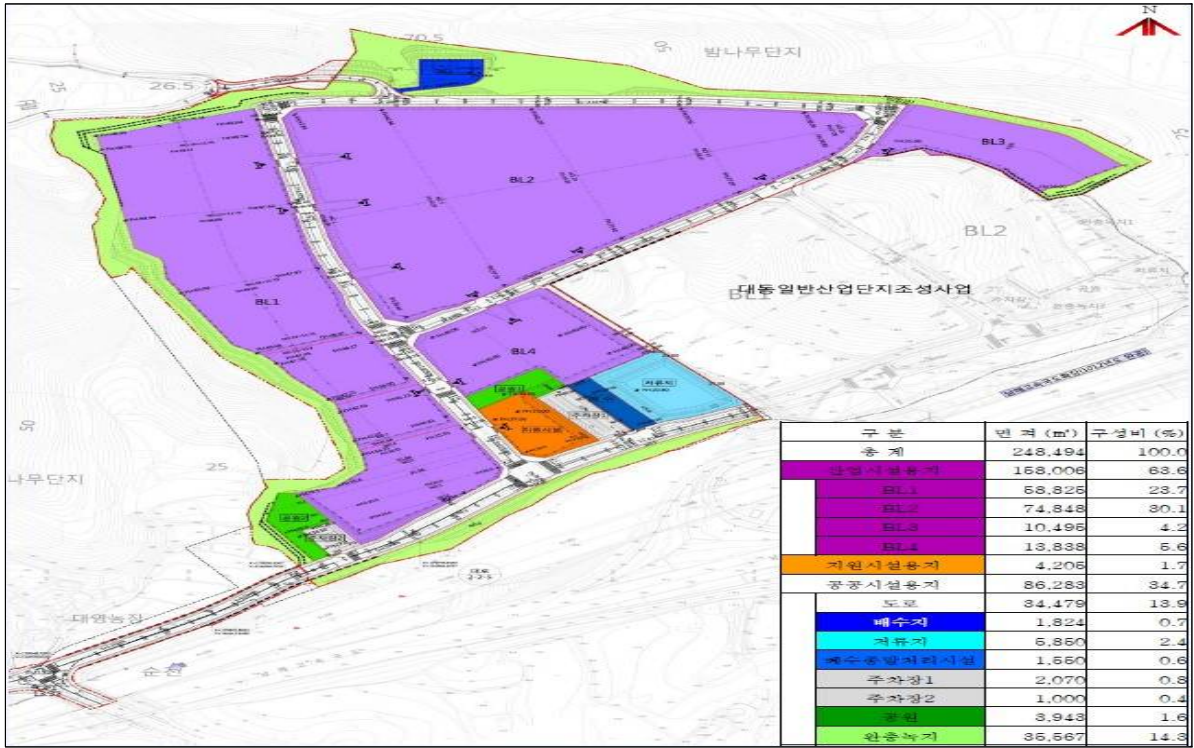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2-3 II-BL2-4 II-BL2-5 II-BL2-6 II-BL2-7 II-BL2-8 II-BL2-9 II-BL2-10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1)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2)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3-1 II-BL3-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4-1 II-BL4-2 II-BL4-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1 I-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별첨 1 : 용도별 구역평면도(토지이용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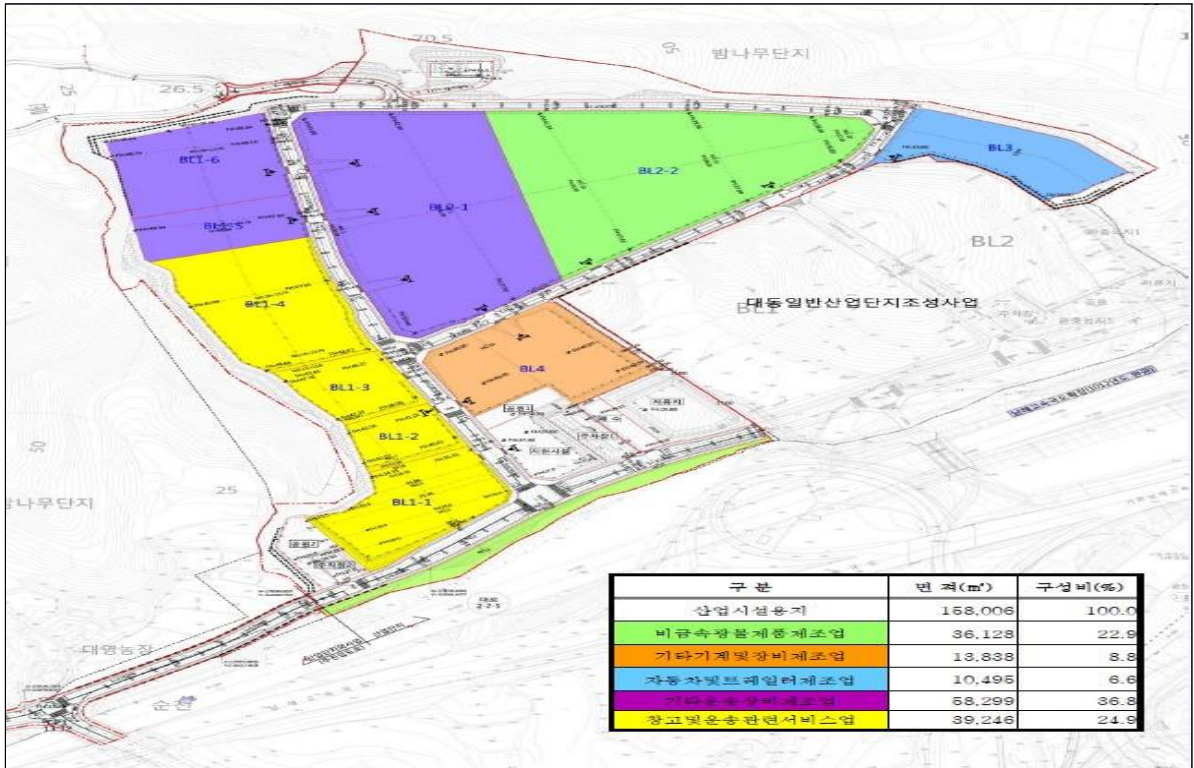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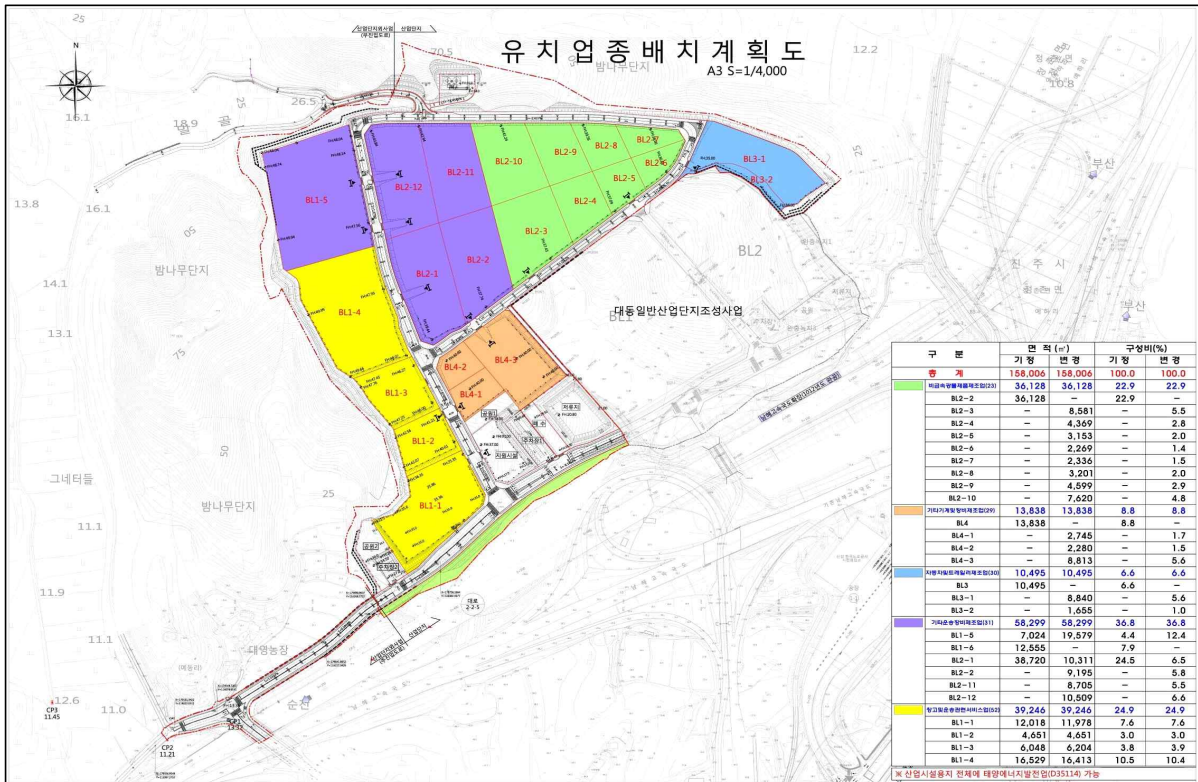


※ 별첨 2 : 업종별배치 계획도

(기정)



(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기본계획 수립·고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2.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일원
3. 계획의 범위 : 115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자혜리 어촌마을 주민들의 노후화된 거주 및 어항환경 개선
 -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류형 해안관광 특화방안 마련
 -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3년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국비 7,000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시비 2,100백만원
- 사업계획의 개요
 - 공통사업 : 방과제 조성, 도로안전 및 어항정비, 부잔교설치
 - 특화사업 : 소규모 공동작업장 조성, 대규모 공동작업장 조성, 구우진 통합알리미 설치, 구우진 캠핑장 조성, 어업활동로 보수 및 개선, 정주어항 야간조명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Tel : 055-831-3126)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구우진항)

일 련 번 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 면	동· 리						
1	서포	자혜	산23-20	도	27,767	5	경상남도	통합알리미
2	서포	자혜	산80-1	도	24,222	5	경상남도	
3	서포	자혜	20-5	잡	967	967	국(기획재정부)	소규모 공동작업장
4	서포	자혜	356-6	잡	35,483	4,450	경상남도	대규모 공동작업장
5	서포	자혜	356-6	잡	35,483	4,210	경상남도	구우진 캠핑장조성
6	서포	자혜	20-4	도	2,827	350	국(국토교통부)	교행도로안전 및 어항보강정비
7	서포	자혜	20-2	임	990	100	국(기획재정부)	
8	서포	자혜	산30-5	도	573	50	개인(강**)	
9	서포	자혜	23-1	도	1,516	6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 27.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12호 (2021. 10. 1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영북항 어촌뉴딜 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526-1번지선 일원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2. 1. 21.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사천시 고시 제2022-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 27.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13호 (2021. 11. 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마도동 산15-3번지선 일원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2. 1. 21.

사 천 시 공 보

제76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2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01. 25.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01. 25. ~ 2022. 02. 10.(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5너 7258	K9	이*훈	2022.01.25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아직 차량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을 무단 운행 중.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